

제 6 장 서비스무역

제 6.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법인은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해당 법인지분의 50% 이상이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며, 당사국의 인이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달리 법인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지배**되며, 또는 법인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그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법인과 그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다른 인과 **제휴**관계에 있게 된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부품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소위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모든 유형의 사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1) 법인의 설립·인수 또는 유지, 또는
- (2)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개설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CRS)란 항공사의 운항일정·가용성·요금 및 요금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직접세는 자본가치의 상승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기업이 지불한 임

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총소득·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으로 구성된다.

금융서비스란 부속서 6-다에 정의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법인이란 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합작회사·1인기업 또는 조합·협동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정부 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¹⁾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다른 쪽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 (2)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 (1) 서비스의 구매·대가 지불 또는 이용
- (2)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도록 당사국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또는
- (3)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당사국의 인의 주재

서비스의 독점공급자란 당사국 영역 내의 관련 시장에서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그 당사국 영역 내에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 (1) 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
- (2) 그 당사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인을 말한다.

1) 협동조합 또는 협회는 인도의 적용 가능한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적 실체이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조사·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제반요소를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운송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항공운송서비스의 가격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비스란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용하거나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 (2)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려 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²⁾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유통·마케팅·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그리고

서비스무역은 다음으로 정의된다.

-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국경 간 공급)
-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해외소비)
-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2)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업적 주재에 대하여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양 당사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거나 제공한다는 것”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g)항에서 사용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양해한다.

-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상업적 주재), 또는
- (4)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연인의 주재)

제 6.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또는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규제·행정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정부조달
 - 나. 정부지원 용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국내의 서비스·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부가되는 모든 조건
 - 다.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다만 그러한 서비스는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송 및 비운송 항공서비스 및 항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³⁾.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 2)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 3)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
4. 이 장은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국적·영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과 관련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국은 지상조업서비스가 항공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의 일부임을 양해한다.

5.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토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입국 또는 일시적 체류를 규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하는 신 서비스는 제6.19조에 따른 추후 검토시에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시에 즉시 이 장으로의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협정 발효시에 전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여지는 경우 추후 검토시에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시에 즉시 통합이 가능한 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 6.3 조

최혜국대우 약속의 검토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전술한 협정상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이 협정에 편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한다. 그러한 모든 편입은 이 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채택한 약속의 전체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제 6.4 조

시장접근

1. 제6.1조에 정의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조건·제한 및 요건 하에서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⁴⁾

4) 당사국이 제6.1조에 언급된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로서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서비스 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에, 그 당사국은 이로 인하여 그러한 자본 이전의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당사국이 제6.1조에 언급된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에, 그 당사국은 이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자국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자국의 일부 지역이나 전 영역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해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가. 수량쿼터·독점·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⁵⁾
-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특정 형태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 바.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 6.5 조

내국민대우

1.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종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⁶⁾

2.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통합·설립·창설 또는 달리 적절하게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소유되는 투자의 연속적인 설립·인수 및 확장은, 이 조에 따라 부여되는 적용 가능한 대우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로서 간주된다.⁷⁾

5) 다호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 상정된 구체적 약속은 어떤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이라는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양 당사국은 비록 연속된 투자의 설립·인수 및 확장시에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제도에 따라 이용가능한 보다 나은 대우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우는 제10장(투자)의 부속서 II(투자에 대한 비합치조치(현존조치)) 또는 III(투자에 대한 비합치조치(미래조치))에 있는 양 당사국 각각의

3.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 또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동종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4.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5.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가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 6.6 조 추가적 약속

양 당사국은 자격·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양허 대상은 아니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 6.7 조 국내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은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그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중재 또는 행정 재판 또는 절

유보안에 자동적으로 추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차를 유지하거나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설치한다. 그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그 절차에서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가 되도록 보장한다.

3. 제2항은 당사국이 그러한 재판 또는 절차를 설치하는 것이 자국의 헌법구조 또는 법체계상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법과 규정에 의하여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부당한 지연 없이 신청의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자격요건 및 절차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국내규제가 서비스무역의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이들 조치에 관한 규율 협상의 결과를 이 장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4조에 따라 공동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규율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한다.

- 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아니할 것

6. 당사국이 제한·요건 또는 자격을 조건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5항에 따른 규율이 통합될 때까지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 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제5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방식, 그리고
- 나. 이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7. 당사국이 제6항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당사국이 적용하고 있는 관련 국제기구⁸⁾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8.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제공한다.

제 6.8 조 인 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표준 또는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규제되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그 서비스 분야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 등 상호인정을 위하여 당사국 각각의 전문가 단체가 그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의 성과를 성취할 목적으로 협상하고 타결하도록 장려한다. 이들 전문가 단체에 의한 협정 또는 약정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고 타결하는데 있어서의 지연 또는 실패는 이 항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14장(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진전사항은 제15.2조(공동위원회와 검토)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양 당사국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3. 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때,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것을 협상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이 또한 인정되어야 함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당사국 각각의 전문가·표준제정 또는 자

8) “관련 국제기구”는 회원지위가 적어도 양 당사국의 관련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율규제기관에 의하여 타결된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제14장(분쟁해결)의 규정은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합의한다.

제 6.9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모든 독점서비스 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그러한 약속과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 만한 사유를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유지 또는 승인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 영역 내에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다음의 경우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나. 자국의 영역 내에서 그들 공급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제 6.10 조

영업관행

1. 양 당사국은 제6.9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관행을 제외한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 영업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력한다. 또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그리고 요청당사국에 의한 그 정보의 비밀보호와 관련한 만족스러운 합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입수 가능한 정보를 요청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 6.11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관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사를 개시하거나 지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자인 국제무대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를 발전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제 6.12 조

지불 및 송금

1. 제6.13조에 상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6.13조

에 따른 경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불합치하는 지본거래에 관한 제한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 6.13 조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1.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러한 의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경제개발 과정에 있는 당사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대한 특별한 압력으로 인하여 특히 경제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외환보유고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제한은

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과 합치하여야 하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경제 및 금융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여야 하며,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해서는 아니 되고,

라. 일시적이어야 하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그리고

마. 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비당사국보다 다른 쪽 당사국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어떠한 제한이나 이에 대한 변경은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되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어떠한 제한을 채택하는 당사국은 채택한 제한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제 6.14 조

일반적인 예외

1. 다음의 조치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⁹⁾

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다음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

2) 사적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계정의 비밀보호, 또는

3) 안전, 또는

라. 상이한 대우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공평하거나 효과적인¹⁰⁾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제6.5조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양자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인에게 이 협정 당사국의 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9)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당사국에 의하여 원용될 수 있다.

10)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당사국이 자국의 조세제도에 따라 채택하는 조치로서 다음 조치를 포함한다.

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당사국 영역 내에 원천이 있거나 소재하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나)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조세부과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다) 준수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라) 당사국 영역 내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마)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과세표준의 성격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바) 당사국의 과세표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자 또는 지사, 또는 관계인 또는 동일인의 지사간의 소득, 이윤·이익금·손금·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배분 또는 조정하는 조치, 이 각주와 제1항 라호의 조세용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의 국내법상의 조세의 정의와 개념, 또는 동등 또는 유사한 정의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제 6.15 조
안보상의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개할 경우 당사국이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어떠한 정보의 공개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 나. 당사국이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 1)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 지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 2) 핵분열 및 핵융합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 3)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또는
 - 4) 통신·전력·수도 공급을 위한 주요한 공공 기반시설을 무력화하거나 그 기능을 저하 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로부터 그러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¹¹⁾, 또는
 - 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 및 이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통보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하여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및 규정상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이 장의 혜택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손상되는 경우에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 장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 6.16 조
보 조 금

11) 제1항나호4)목은 그러한 조치가 다른 쪽 당사국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한다.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무대에서의 진전에 따라 보조금 대우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로 인하여 자국의 이익이 불리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간주하여 요청할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에 착수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협의기간 동안, 보조금을 제공한 당사국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금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정보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조치가 도입된 자국의 법과 규정

나. 무상교부·차관 또는 조세 조치를 포함한 조치의 유형

다. 정책 목적 및/또는 조치의 목적

라. 프로그램 또는 보조금의 일시 및 기간, 그리고 그 밖에 그에 부속된 시간 제한, 그리고

마. 잠재적 수혜자에 관하여 적용된 기준을 포함한 조치의 자격요건

4. 제14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따라 제기된 요청이나 개최된 협의 또는 이 조에 따라 양 당사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17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 약속에 관한 각 양허표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한 조치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 계획, 그리고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6.4조 및 제6.5조와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6.4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한

다. 이러한 경우 그 기재는 제6.5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구체적인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부속서 6-가 및 6-나로 이 장에 부속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에 대한 약속은 오직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인 부속서 6-가 또는 6-나가 적용된다.

제 6.18 조 **양허표의 수정**

1. 당사국은 약속이 발효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 조에 따라 자국의 양허표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수정하는 당사국은 그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 전에 그 다른 쪽 당사국에게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 의사를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하는 당사국은 모든 필요한 보상적 조정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다. 그러한 협상 및 합의에 있어서 그 당사국은 협상 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서 더 불리하지 아니한 호혜적인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6개월 내에 상호 만족하기 위한 보상적 조정 협상을 타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실패하였을 경우 제14장(분쟁해결)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 6.19 조 **점진적 자유화**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무역에 관하여 양 당사국간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모든 차별의 폐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소한 매 3년마다 또는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다 신속히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검토하도록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 및 개별적 분야에서 국가정책 목적 및 당사국의 발전 수준에 관하여 적절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 6.20 조

투 명 성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그리고 긴급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 시까지 공표한다. 당사국이 서명국인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공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포함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조치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사안에 대한 특정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질의처를 설립한다.

제 6.21 조

비밀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 시 범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공기업 또는 사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기업의 적법한 상업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6.22 조

혜택의 부인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부인하는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그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 나.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 부인하는 당사국이
- 1) 비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한 쪽 당사국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 2)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용 또는 사용하는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다.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활동 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또는
- 라.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비당사국 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이고,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그 법인과 거래를 금지하거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게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손상될 통보 또는 명령을 포함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경우

제 6.23 조

서비스·투자 연계

1.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대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가. 제2항을 조건으로, 제10장(투자)의 다음 조항들은, 그러한 서비스 분야가 부속서 6-가 또는 6-나의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 허포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오직 투자와 관련된 범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 1) 제10.4조(대우의 최소기준)
- 2) 제10.10조(송금)
- 3) 제10.12조(수용 및 보상)
- 4) 제10.13조(손실 및 보상)
- 5) 제10.14조(대위변제)
- 6) 제10.15조(특별 형식 및 정보 요건)
- 7) 제10.19조(사법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 그리고

8) 제10.21조(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그리고

나. 제10.22조(발효·기간 및 종료)는 가호에 적용된다.

2. 제10.2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제10장(투자)의 다음 조항들은, 그러한 서비스 분야가 부속서 6-가 또는 6-나의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와 관련된 범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1) 제10.12조(수용 및 보상), 그리고

2) 당사국이 제10.12조(수용 및 보상)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관하여만 제10.21조(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